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 1. 1.부터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란
무엇인가요?

농어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90일, 5개월) 동안
해외 입국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17년부터 본격 시행)

※ ’15년 ~ ‘21년 지자체 136곳, 외국인 8,184명 참여

※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이 어려워진 ’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 허용(1,516명 참여)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어
해외 인력 수급은 더 어려워지고,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여
농어가의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21.12.14. 법무부 보도자료)

①

농작물 요건은 폐지되고,
농어가당 최대 12명을 연중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규모·영세 농어가를 위해 1주일 단위 고용도 가능합니다.

현 재		개 선
농작물 요건 충족	▶	폐 지
최대 9명 고용	▶	최대 12명 고용 허용된 인원수 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
1개월 이상 고용	▶	1주일 이상 고용

②

"국내 거주자 상시 고용, 고용 대상 외국인 확대!!"
이제 농어가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된 대상

유학생, 특별체류허가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구직(D-10) 자격 외국인

기존 대상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 외국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

3

“성실근무 해외 입국 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등 계절근로 참여자별로 혜택을 부여합니다.

해외 입국 근로자

성실근무 시 재입국 기회 보장

유학생

점수제 우수인재(F-2-7)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60일 이상 참여)

동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6개월 이상 참여) 등

④

근로자 무단이탈로 농어가에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겠습니다!!

송출국가

귀국보증금 예치 등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함

불법고용주

무단이탈 근로자를 불법 고용 시 근로자 초청 제한 등 제재 강화

5

"계절근로 참여 신청 절차,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농어가와 외국인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5개 규제성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6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도 강화됩니다.

농어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계절근로자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 시 명시)

근로조건·인권보호 취약지역을 매월, 수시로 점검하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무처 변경을 허용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법무부